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신홍균*

목 차

- I. 서언
- II.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법적 구속력과 한계
- III.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대한 안보리 제재
- IV. 안보리 결의와 우주법
- V. 결론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서언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기 전에 우주공간을 둘러싸고 상반된 학설이 대두된 바 있다. 하나는 당시의 국제법 원칙하에서는 어떠한 국가라도 자국의 영토 상공에 인공위성을 올려 놓는 타국의 행위를 전쟁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과¹⁾ 반면에 인공위성이라는 새로운 물체를 발사하여 비행시키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규범이 없는 만큼 어떠한 국가라도 우주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설이 그것이다.²⁾ 실제로는 1957년 구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의 비행이후에 단 하나의 국가도 영공침범을 이유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고, 이에 우주비행의 자유는 하나의 관습법 규범이 되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는 우주공간이 차별없이 모든 국가들에 의해서 자유로이 탐사되고 이용되어야 함을 규정하면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성문화하였다.

그와 같은 관습법의 성문화 배경으로는 기능주의적 입장과 당시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첫째, 우주공간과 영공의 경계가 획정이 안되어 있기에 우주비행의 자유는 우주공간에서의 비행의 자유라기 보다는 우주활동이라고 간주되는 활동의 자유라고 인식되어 왔다. 즉 공간주의의 입장보다는 이른바 기능주의 입장이 우선한다.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을 목표로 하는 우주물체의 비행이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인식되어 왔다. 1967년 우주조약은 공간주의보다는 기능주의 입장을 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³⁾

둘째, 정치적 고려사항이다. 우주개발의 초기 당시에 미국과 구 소련을 비롯한 국가들이 국가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1) Haley, A.G., "Space Law and Governments", Appleton Century Crofts, New York, 1963, pp.65-67, Matte, N.M., "Space activities & emerging international law", Centre for Research of Air & Space Law, McGill University, 1984, p.80에서 재인용

2) Jacek Machowski, "the Legal status of unmanned space vehicles", *the 2nd Colloquium on the Law of Outer Space*, 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 1959, p.112

3) Marco Markoff, "Trait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de l'espace", Pedone, 1973, p.201 ; "우주시대의 도래이후 영공과 우주공간 사이의 경계획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제법상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이영진,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2호. 2015, 434면

거부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⁴⁾

1967년 우주조약의 초안자들의 규정 방법 및 국가들의 그러한 현실적 고려가 우주비행 자유 원칙을 사실상 하나의 레토릭으로 만들었다. 즉 우주비행을 누가 향유하는가는 법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정해져 왔다. 그러한 모습은 우주비행의 자유가 정당화 되어 온 역사에서 보여진다. 예컨대, 다양한 종류의 우주상업활동은 우주공간의 이용 편익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무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한 레토릭의 또 다른 모습이 북한의 발사실험이다. 북한은 우주궤도에 인공위성을 진입시키려는 발사이므로 우주공간의 이용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비행의 자유의 향유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권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발사체 실험이 우주개발이라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적 이용 개념이 추상적이기에, 그래서 레토릭에 가깝기에 북한의 이 주장 역시 레토릭에 가깝다.

반면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의 실험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의 규범 시각에서는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난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들과 우주법의 원칙인 우주비행의 자유가 북한의 발사 행위에 대해서 상충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평화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보다 구체적인 규범을 통해서 레토릭을 넘어선 논리와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추상적 규범과 구체적 규범의 상충의 결과는 우주법의 우주비행의 자유가 우주법의 체계를 벗어나서 그러한 결의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먼저 그러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법적 구속력과 한계에 관해 살펴보고, 이어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결의와 우주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4) Leon Lipson, Nicholas Deb. Katzebnach, "Report to the NASA on the law of outer space", 1961, July, American Bar Foundation, p.27

II.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법적 구속력과 한계

본장에서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법적 구속력과 그 한계를 국제연합헌장의 해석 및 여러 관행에 대한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안보리 결의의 법적 구속력

(1) 국제연합헌장 제25조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칭함) 결의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국제연합 헌장 제25조다. 동 조항은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안보리를 국제평화유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만들려는 조약 초안자들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국제평화유지 시스템의 기본을 수립하는 것으로 평가된다.⁵⁾

실제적으로도 해석에 관한 논쟁이 안보리내서만이 아니라 총회에서도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 특히 나미비아 사건에 관한 안보리 결의에서는 제25조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⁶⁾, 이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법원의 권고적 의견은 “제25조는 강제조치에 관한 결정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장에 따라서 채택된 안보리의 결정에 적용된다”고 확인하였다.

안보리의 결의가 그러한 결정에 해당하는가는 결의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법법원은 위 나미비아 권고적 의견에서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 여부에 관한 결정은 결의의 용어가 주의깊게 분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⁷⁾ 구체적으로는 그 결의의 제목이 어떻게 쓰여졌는가(libellé)가 관건이 된다.⁸⁾

5) Jean-Pierre Cot, Alain Pellet, “La Charte des Nations Unies”, *Economica*, 1991년, 471면,

6) Resolution 269 (1969) of 12 August 1969

“The Security Council, ... Mindful of its responsibility to take necessary action to secure strict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entered into by States Members of the U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of the Charter of the UN ...”

7) ICJ Advisory Opinions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para.114

8) Jean-Pierre Cot, Alain Pellet, 상게서, 475면

(2) 안보리 결의의 해석과 법적 구속력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라 칭함)는 나미비아 권고의견에서 안보리 결의의 해석에 있어서 "그 구속력에 대한 결론을 내기전에 신중히 분석되어야 하는 바, 국제연합헌장 제25조에 따른 권한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에, 그러한 권한이 사실상(in fact) 행사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각각의 경우에 주어져야 한다. 즉 각각의 안보리 결의에 담긴 용어, 그 결의를 이끌어낸 토의, 인용된 국제연합헌장, 그리고 안보리 결의의 법적 효과를 결정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반적인 상황 등이 포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⁹⁾

용어의 선택에 따른 구속력 판단에 있어서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한다(demand), 희망한다(call upon) 등은 선언적 의미를 주는 것으로, 반면에 결정하다(decide)는 처분의 의미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 269(1969)로서 이 결의에서 헌장 제25조가 전문에서 인용되었지만, "국제연합회원국들에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모든 거래를 삼갈 것을 희망한다"(calls upon all States to refrain from all dealings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Africa purporting to act on behalf of the Territory of Namibia)라는 표현에 의해서 결의 채택 당시에 투표한 국가들은 결의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헌장의 특정 조항의 인용에 따라 구속력이 달라지기도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¹¹⁾

9)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p. 53, para. 114.)

10) Jean-Pierre Cot, Alain Pellet, 상게서, 476면

11) U.N. SCOR, 59th Sess., 4956th mtg. at 3, U.N. Doc. S/PV.4956 (Apr. 28, 2004) Security Council Fifty-ninth year 4956th meeting Wednesday, 28 April 2004, 12.45 p.m. New York

2. 안보리 결의의 한계

(1) 현장에 의한 제한

안보리의 국제법에 대한 권한(power)은 안보리의 임무가 평화와 안보의 유지라는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현장상의 (즉 법률상의) 규범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제한된다. 즉 안보리의 권한은 현장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다.¹²⁾ ICJ 판례에서도 이는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Lockerbie 사건에서 Jennings 재판관은 “합법적으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력(all discretionary powers of lawful decision-making)은 법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규율된다.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원(authority)은 법 그 자체에서 기원한다.¹³⁾ 또한 나미비아 권고의견에서 ICJ는 안보리의 권력은 현장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다.

(2) 일반국제법에 의한 제한

첫째,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조치와 목적간의 비례성이다. 국제연합헌장 제39조는 안보리가 취할 조치를 안보리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안보리의 결정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될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안보리 결의에 담긴 조치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과 상응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둘째 안보리 결의가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학설상 논쟁으로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자국내 국적민의 인도를 강제하는 안보리 결의에 반하여, 리비아가 ICJ에 요청한 임시조치를 ICJ가 거절하였는데, 일부 학설은 이를 국적민 인도를 결정할 주권을 제한한 안보리의 결의를 합법인 것으로 보기도 한

파키스탄 대표의 발언 “under this resolution, legally binding obligations under Chapter VII arise only in respect of paragraphs 1, 2, 3, 4 and 5, which start with the word “decides” and which, at our request, have been grouped together for presentational purposes. This offers reassurance that the provisions of the resolution will not serve to impose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on States or to transfer the general responsibility for globa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to the Security Council.”

12) Alexander Orakhelashvili, “Security Council Acts : Meaning and Standards of Review”,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Vol.11, 2007, p.147

13) ICJ Reports 1998,9 et seq.(110)

다.14) 그러나 로커비 사건에서 재판장 대행직을 수행한 Oda판사는 그의 별도 선언에서, “형사상 소송 관할권을 국가가 대상 자연인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바, 리비아가 (임시조치를 요청하면서) 제기한 현재의 질의는 그러한 인도요구의 강제가 국제법에 반한다고 간주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는 ... 일반 국제법하의 주권의 보호에 관련되는 것이지 몬트리올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이 사건의 쟁점 사항은 후자(즉 몬트리올 협약의 해석과 적용)이다. (만약에 리비아가) 주권의 침해를 이유로 청구하였다면 완전히 다른 소송이었을 것이다. ... 리비아의 임시조치 요청은 몬트리올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임시조치 요청의 대상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점이 본 법정에서 임시조치 요청을 거절하는 주된 이유이다.”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로커비 사건에서 결과 자연인 인도를 강제하는 안보리의 결의가 주권 침해금지 등의 일반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Ⅲ.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대한 안보리 제재

국제연합 안보리의 관할권은 기본적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이며, 헌장에 규정된 안보리의 관할권도 특정한 사태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특정 무기체계의 존재나 발명과 같이 현실화된 사태나 사건으로 구현된 것에도 관할권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쟁이 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침략행위는 당연히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자명하지만, 그렇다면 핵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그러한 침략행위와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15) 그러나 현실적으로 1992년 안보리 이사국의 정상들은 국제연합 헌장 제7장에서 다루고 있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14) Stefan A. G. Talmon, “Security Council Treaty Action”, *Revue Hellénique de Droit International*, Vol. 62, pp. 65-116, 2009

15) Vik Kanwar, “Two Crises of Confidence : Securing Non-Proliferation and the Rule of Law Through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hio Northern University Law Review*, 35 Ohio N.U. L. Rev. 201면

침략행위”의 개념에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포함된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고, 그래서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¹⁶⁾

1. 안보리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결의

(1) 대량살상무기(WMD) 금지 결의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핵프로그램의 감시를 촉(call upon)하는 결의 487,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 582, 598, 612 및 620,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파괴 및 검증을 요구한 결의 687 등을 채택하여 왔다.

그중에서 안보리 결의 687은 냉전의 종식 이후에 안보리가 대량살상무기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결의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안보리 결의 687은 제8조에서 이라크가 모든 생화학 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파괴 등을 무조건 수락할 것을 결정(decide)한다고 규정하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687(1991)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최초로 규정하였다. 결의 687은 그 전문에서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는 중동지역에서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2)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금지 결의

안보리 결의 제1540호는 “대량 살상무기와 무기운반 수단의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결의는 그 전문에서 핵무기 등의 확산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반하는 수단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1540은 대량살상무기만이 아니라 그 운송수단도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미사일 실험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제사회는 인식하게 되었다.¹⁷⁾ 안보리 결의 1540에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 금지였다.¹⁸⁾

16) Vik Kanwar, 위 논문 201면

17) Eric Yong-Joong, “Legal Analysis of the 2006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s WMD Development”,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December, 2007, Eighteenth Annual Philip D. Reed Memorial Issue, p.12

결의 제1540호는 앞에서 살펴 본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에 관한 요소중에 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다. 즉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른 결의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모두 결정한다(decide)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안보리결의 제1737호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을 인용하면서 제1조가 이란이 핵물질 관련 활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결정(decide)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모든 국가가 이란의 핵물질 관련 물품의 공급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12조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업 등의 자국내 자산을 모든 국가들이 동결하여야 함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안보리결의 제1929호는 위 결의와 마찬가지로 국제연합헌장 제7장의 제41조를 인용하면서, 제9조는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발사를 포함하여 탄도 미사일에 관련된 일체의 행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을 결정한다(decide)고 규정하였다.¹⁹⁾

안보리결의 제1737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제출된 패널보고서는 이란이 2012년7월에 the Great Prophet VII exercises 중에 Shahab-1호 및 2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안보리결의 제1929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²⁰⁾

2. 북한 발사체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1)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695호

북한은 2006년7월5일 동해상을 향하여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안보리는 이 사태를 논의하고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중심으로 협의 끝에 중국과 러시아의 초안을 절충하여 7월16일 결의 제1695호를 채택하였다. 일본이 제출한 초안은 헌장 제7장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중국과의 협의 결과로

18) Eric Yong-Joong Lee, 위 논문 p.13

19) “9. Decides that Iran shall not undertake any activity related to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delivering nuclear weapons, including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d that States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transfer of technology or technical assistance to Iran related to such activities;

20) Briefing by the Chairman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37 (2006), S/PV.6999, Security Council Sixty-eighth year 6999th meeting, Monday, 15 July 2013, 3 p.m.

채택된 최종본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특별한 책임하에"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실험유예 문제에 대해서 일본 초안은 결정하다(decide)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중국 초안은 요청한다(call upon)를 사용하였고, 협의 결과 촉구(demand)가 최종본에 사용되었다.

(2) 안보리 결의 1718호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2006년 10월 14일 국제연합 안보리는 결의 1718을 채택하였다. 안보리 결의 1718(2006)은 제2항에서 북한은 여하한 더 이상의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하였다.²¹⁾ 또한 제5항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 것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²²⁾ 안보리 결의 1695호에는 인용되지 않았던 현장 제7장과 제41조가²³⁾ 명시적으로 인용되었다. 그 효과는 동 결의의 구속력이 강화된다는데 있다.

(3) 안보리 결의 1874

안보리 결의 1874는 현장 제41조에 따라서 취하여야 하는 조치임을 명시하여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의 활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결정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3조는 decides라고 시작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제3조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종전의 중단선언에 복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반면에 탄도미사일이 아닌 여하한 발사(any launch)의 금지에 대해서는 제2조에서 decides가 아닌 촉구한다(demands)고 규정하고 있다.²⁵⁾

21) 2. Demands that the DPRK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 or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22) 5.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23) 제 41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24) "3.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es;

(4) 안보리결의 2087

유일하게 모든 국가의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아울러 그 자유가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제한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을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5) 안보리 결의 2270

결의 2270은 마찬가지로 헌장 제41조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위 2009년도 결의와 달리 any further launches의 금지를 demand가 아닌 decisions에 속한 사항이라고 명시하여 탄도미사일만이 아니라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²⁶⁾

요컨대, 안보리 결의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과 국가들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련의 안보리 결의에 채택된 용어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 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IV. 안보리 결의와 우주법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우주공간에의 접근에 관한 기존의 우주법 규범 체계와 경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한 경합은 일반 국제법의 체계 내에서, 특히 일반

25) “2. Demands that the DPRK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 or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26) “2. Reaffirms its decisions that the DPRK shall not conduct any further launches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nuclear tests, or any other provocation, and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es, and demands that the DPRK immediately comply fully with these obligations;

국제법의 법원에 관한 원칙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장에서는 일반 국제법의 법원의 원칙의 시각에서 안보리의 결의의 성격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안보리 결의와 우주법 규범간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 안보리 결의와 일반 국제법의 법원

(1) 국제연합헌장 제103조와 국제조약

국제연합헌장 제103조는 안보리의 결정, 예컨대 제재 결정이 무역거래 조약을 체결한 회원국의 해당 조약보다 우선한다고 해석된다.

국제법의 다양화와 확장성에 관한 국제법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103조가 국제연합헌장과 상충하는 조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즉 안보리 결의와 조약간의 상충 발생시에, 해당 조약이 무효화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 안보리결의에 따른 의무가 해당 조약에 따른 의무보다 우선한다.²⁷⁾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연합 헌장을 하나의 헌법으로서 간주하고 상충되는 하위(lower) 법규범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예로서는, ICJ는 Lockerbie 사건에서 안보리결의 748(1992년)에 따른 의무가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²⁸⁾

27)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CN.4/L.682, 1, May-9 June and 3 July-11 August 2006, para. 333, 이하 "국제법 다양화 ILC 보고서"라 칭함)

28) Marko Divac Öberg, "The Legal Effects of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in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no.5 p.884 ; ICJ는 리비아가 몬트리올 협약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 748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며, 마찬가지로 다른 회원국들도 리비아가 위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할 의무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리비아의 권리에 기초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리비아의 요청을 안보리가 거절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로 그러한 리비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리비아가 ICJ에 요청한 임시조치를 법원은 거절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Case Concerning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Libyan Arab Jamahiriya v. United States of Americ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4 april 1992, para.40

(2) 안보리 결의와 국제 조약간의 관계

안보리결의가 제재 대상국가에게 조약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는 대상 국가가 이미 당사국인 조약의 의무만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행과 학설이 나뉘어진다.

예컨대, 대체적으로 안보리 결의가 군비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는 다섯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진다. 해당 국가로 하여금 군비통제 조약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방식, 해당 국가에게 현재는 구속력없는 군비통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 안보리가 군비통제 조약의 조항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 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 기존의 조약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recall 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안보리결의 687의 제7조는 독가스사용금지에 관한 1925년 제네바 프로토콜에 따른 의무를 이라크가 준수하도록 invite하고 아울러 이라크가 비준하지 않은 생화학무기 금지에 관한 1972년 협약을 비준하도록 invite하고 있다. 제8조는 이라크가 아무 조건없이 모든 생화학무기와 사정거리 150킬로미터 이상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국제 감독하에 파괴, 제거 또는 무력화할 것을 결정(decide)하고 있어서 이라크가 당사자가 아닌 조약의 군비통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사례에 속한다.

또한 제12조는 이라크가 핵무기 또는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의 획득 및 개발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NPT 조약 제4조의 제1항은 평화적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연구 생산 사용할 조약 당사국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안보리 결의 제12조는 NPT 조약에 따른 이라크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사례에 속하는 것으로서,²⁹⁾ 이를 국제연합헌장 제103조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의무만에 대해서 헌장에 따른 의무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해당 조약에 따른 권리도 변동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한다.³⁰⁾

북한의 NPT 탈퇴 이후의 일련의 안보리 결의도 구속력없는 조약을 부과한 사례로 보기도 한다. 북한은 2003년1월에 NPT에서 탈퇴함을 선언하였고,

29) James D. Fry, "Dionysian Disarmament : Security Council WMD Coercive Disarmament Measures and Their Legal Implications",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Winter 2008, p.258

30) 위 Fry 논문 p.259

IAEA와의 세이프가드 협정도 탈퇴하였다. 2006년10월9일에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 보유와 실험 금지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IAEA는 북한이 적절한 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탈퇴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제3조는 북한이 NPT 탈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demand)하였다. 안보리결의 1874의 제5조도 같은 요구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NPT 및 세이프가드 협정으로의 복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학설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먼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4조는 조약의 탈퇴는 조약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 관습법을 성문화한 규정인데, 안보리 규정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이로서, 이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가 위법이다.³¹⁾ 이와 대비되는 주장은 안보리 결의가 대량살상무기 관련 조약에서의 탈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거나, 아니면 북한 핵실험이라는 특정 사실관계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라고 본다.³²⁾ 또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은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할 것을 요청(demand)한 것에 불과하므로 북한에게 조약으로의 복귀를 부담지운 것은 아니고, 또한 북한의 해당 조약의 탈퇴를 무효화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3) 안보리결의와 관습법간의 관계

국제연합헌장 제103조는 "여하한 다른 국제 협약(international agreement)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문언 해석상 이는 성문화된 조약상의 의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된다.³³⁾ 헌장의 작성에 있어서도 초안에 있었던 관습법을 포함한 모든 다른 약속(all other commitments)이라는 표현이 최종본에서는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앞의 문언 해석의 결과가 옳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을 하나의 헌법으로서 보려는 시각에서는 관습법도 포함된다. 특히 그러한 시각의 논거는 제103조가 제25조와 연동되어 해석되어야

31) 해당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을 부과하는 것은 월권(ultra vires)에 해당한다. M. Wood, "The Law of Treaties and the UN Security Council: Some Reflections" in E. Cannizzaro (ed.) *The Law of Treaties Beyond the Vienna Convention* (201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54.

32) Daniel H. Joyner & Marco Roscini, *Non-Proliferation Law as a Special Regime: A Contribution to Fragmentation Theory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166-167

33) 국제법 다양화 ILC보고서, para.344

하고, 그래서 조약상의 의무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의무와 헌장에 따른 의무 간의 상충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가운데에, 국제법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리의 관행은 안보리의 결의가 상충되는 관습법에 우선한다는 이해에 기초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³⁴⁾

2. 우주법 법원으로서의 안보리 결의의 한계

(1) “발사금지”의 법적 성격과 지위

안보리 결의는 두가지 방식으로 발사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안보리결의 제1874호 제3조에 따라서 북한이 발사체실험유예에 복귀하여야 한다는 결정(decide)이고, 다른 하나는 안보리결의 제1874호의 제2조에 따라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를 금지함을 촉구(demand)하는 것, 또한 제3조에 따라서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결정, 아울러 안보리결의 제2270호 제2조가 그러한 여하한 발사의 금지를 촉구가 아닌 결정(decision)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첫째, 북한은 미사일실험유예선언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⁵⁾ 안보리 토론 과정에서의 주장은 법적 효력을 수반하는 일방선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종전의 미사일실험유예선언을 폐기하는 선언이다.³⁶⁾ 그렇다면 당사국에게 구속력없는 일방선언으로의 복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는 NPT로의 복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 제1718호와 유사하다. 그래서

34) 국제법 다양화 ILC보고서, para.345

35) Security Council, Sixty-first year 5490th meeting Saturday, 15 July 2006, 3.45 p.m. New York, S/PV.5490

북한 대표의 발언 “As for the moratorium on long-range missile test flights, whic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greed with the United States in 1999, it was valid only wh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dialogue was under way. The Bush Administration, however, scrapped all the agreements that the preceding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had concluded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otally scuttled the bilateral dialogu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already clarified, in March 2005, that its moratorium on missile test firing had lost its validity. The same can be said of the moratorium on long-range test firing whic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agreed with Japan ...”

36)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 유예를 선언하였던 프랑스가 1995년 6월13일 유예취소를 선언한 바 있다.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둘러싼 학설이 이 경우에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구속력없는 일방선언으로의 복귀를 강제하는 것이기에 월권(*ultra vires*)이거나,³⁷⁾ 또는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으로서 제재에 해당한다.

둘째,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결정하는 조항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의 중지를 요청하는 조항 및 그 요청을 결정으로 보는 조항은 1967년 우주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평화적 목적의 내용을 정하는 성격을 갖거나 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다.

(2) 우주법에 대한 특별규범(*lex specialis*)로서의 안보리 결의

북한은 최근에 1967년 우주조약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3조는 우주활동은 국제연합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협조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됨을 조건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 헌장 전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주활동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법은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도 포함하고 있다.³⁸⁾

국제조약에 규정된 일반적인 원칙이 추후에 제정될 특정한 규범이 고려하여야 할 원리나 목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되기도 한다.³⁹⁾ 국제연합 해양법협약 제27조가 이에 해당한다.⁴⁰⁾ 예컨대 회귀어류인 Southern Bluefin Tuna의 보호를 위해서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가 1993년에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the Southern Bluefin Tuna를 체결하였다. 일본의 어류보호조치가 위 협정을 위반한다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은 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해양재판소의 관할권이 없다고

37) M. Wood, 전제 논문

38) 정영진,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1호, 2015, 308면

39) 국제법 다양화 ILC보고서, para.29

40) 제87조 (공해의 자유)

1. 공해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공해의 자유는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사된다. 연안국과 내륙국이 향유하는 공해의 자유는 특히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다.

...

2. 모든 국가는 이러한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공해의 자유의 행사에 관한 다른 국가의 이익 및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이 협약상의 다른 국가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한다.

주장하였다. 중재재판소는 국제연합해양법협약과 위 협약은 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규정된 포괄적 원칙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연동된다고 판시하면서 국제해양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특히 중재재판소는 원칙을 세운 조약이 있고 그 조약의 당사자가 그 원칙을 이행하는 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원칙을 세운 조약의 의무가 필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행하는 조약의 의무 위반은 원칙을 세운 조약의 위반일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중재재판소는 또 다른 예로서 인권협약을 체결한 국가에게 국제연합헌장 제1조,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제시하였다.

즉 평화적 이용의 원칙을 세운 조약이 1967년 우주조약이고 안보리결의가 평화적 이용의 내용을 법률로 정한 것이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는 1967년 우주조약의 의무의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발사금지를 결정하는 안보리 결의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우주조약 당사국인 북한에 대한 발사금지 의무가 우주비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부과되는 것은 적법하다.⁴¹⁾

(3) 단순한 제재로서의 안보리 결의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금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설상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안보리의 결의도 결정(decide)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법의 제정에는 못미치고 단순한 제재의 결정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한 주장의 논거는 안보리의 임무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인 만큼, 안보리의 결정에 의해서 취해지는 조치는 상황이 종료되면 마찬가지로 종료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입법 수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⁴²⁾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ICJ의 Onyeama 판사는 나미비아 권고의견 사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미비아에 대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선언한 안보리 결의 276(1970년)의 제2항⁴³⁾은 그러한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이 아니

41) 학설은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따라서 우주를 통과하여 지구 내 일정지점을 타격하는 핵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실험이 방해받지(위법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있다. 김한택,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1호, 2015, 283면

42) Matthew Happol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3 a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16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93 (2003)

43) “Declares that the continued presence of the South African authorities in Namibia is illegal and

라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안보리의 평가이다“라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안보리의 행동은 특정 상황에 대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안보리 결의를 둘러싼 국가들의 관행과 학술적인 그 해석 등의 맥락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의 중지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북한은 미사일실험유예선언의 철회 선언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북한에게 유예선언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는 안보리결의는 해석상 월권의 여지가 있다. 아울러 북한에게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안보리 결의는 우주법상의 우주비행의 자유 원칙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

우주비행의 자유 원칙은 국제연합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의 준수하에서 인정되는 바, 국제법상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위법하다면 우주비행의 자유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이 국제법상 부과되는 의무라면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원칙이 국제법상의 의무로 성립하는 근거는 안보리 결의가 우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함을 요한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는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입법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는 학설도 간과될 수는 없다.

결국,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에 이르는 국가간 합의의 방식이 과연 국제법상의 입법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제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주공간과 그 공간에서 국가들의 우주활동을 규율의 객체로 하면서,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법의 성격상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르는 안보리의 결정이 우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that consequently all acts taken by the Government of South Africa on behalf of or concerning Namibia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Mandate are illegal and invalid”

에 안보리 결의는 우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한택,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1호. 2015
- 이영진,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2호. 2015
- 정영진,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1호. 2015,
- Jean-Pierre Cot, Alain Pellet, “La Charte des Nations Unies”, *Economica*, 1991년
- James D. Fry, “DIONYSIAN DISARMAMENT: SECURITY COUNCIL WMD COERCIVE DISARMAMENT MEASURES AND THEIR LEGAL IMPLICATIONS”,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Winter 2008,
- Haley, A.G., “Space Law and Governments”, *Appleton Century Crofts*, New York, 1963
- Matthew Happol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3 a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16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93 (2003)
- Daniel H. Joyner & Marco Roscini, “Non-Proliferation Law as a Special Regime: A Contribution to Fragmentation Theory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Vik Kanwar, “Two Crises of Confidence : Securing Non-Proliferation and the Rule of Law Through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hio Northern University Law Review*, 35 *Ohio N.U. L. Rev.*
- Leon Lipson, Nicholas Deb. Katzebnach, “Report to the NASA on the law of outer space”, 1961, July, *American Bar Foundation*,

- Jacek Machowski, "the Legal status of unmanned space vehicles", the 2nd Colloquium on the Law of Outer Space, 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 1959,
- Marco Markoff, "Trait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de l'espace", Pedone, 1973
- Marko Divac Öberg, "The Legal Effects of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in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no.5
- Alexander Orakhelashvili, "Security Council Acts : Meaning and Standards of Review",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Vol.11, 2007, p.147
- Stefan A. G. Talmon, "Security Council Treaty Action", Revue Hellénique de Droit International, Vol. 62, pp. 65-116, 2009
- M. Wood, "The Law of Treaties and the UN Security Council: Some Reflections" in E. Cannizzaro (ed.) The Law of Treaties Beyond the Vienna Convention (201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ric Yong-Joong, "Legal Analysis of the 2006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s WMD Development",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December, 2007, Eighteenth Annual Philip D. Reed Memorial Issue

초 록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보리의 수차례의 결의에서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결정하는 조항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의 금지를 촉구하는 조항 및 그 촉구를 결정으로 보는 조항은 1967년 우주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평화적 목적의 내용을 정하는 성격을 갖거나 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금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설상 WMD에 관련된 안보리의 결의도 결정(decide)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법의 제정에는 못미치고 단순한 제재의 결정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에 이르는 국가간 합의의 방식이 과연 국제법상의 입법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제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주공간과 그 공간에서 국가들의 우주 활동을 규율의 객체로 하면서,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법의 성격상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르는 안보리의 결정이 우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안보리 결의는 우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북한 발사실험, 안전보장이사회, 대량살상무기, 우주법, 우주조약

Abstract

Legal Issues Regarding the Launch Vehicle by DPRK : the Scope and Limit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hin, Hong-Kyun*

UN Security Council is entitled to power for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the threat to the peace. Specifying the provisions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pter 7 of the UN Charter, its resolution is deemed as document confirming its decision about the threat to the peace. In general, resolu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are considered bind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of the Charter.

Regarding to the terms of the Resolutions to be interpreted, the word "decide" is used as to the suspension of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 the word "demand" is used as to the stopping of the the launch of ballistic missile, and the word "demand" is used as to return to the missile test moratorium. These provisions may be deemed to determining specific obligations to be imposed upon the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1967 Outer Space Treaty. On the other hand, the Resolutions may be limited to the decision, not leading to a sort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 missile test case has reminded us of continuing discussion about whether the decision of the Security Council lacks the legislative authority due to its decision process. Furthermore, having regard to the outer space and space activities, the outer space law regime would be not compatible with the Security Council decision process in that the former presupposes the agreement among all States parties, while the latter based upon the agreement between Council

*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College of Law

member States. Therefore, it is premature to consider the Security Council decision as becoming the *lex specialis* of the space law regime.

Key words : North Korea launcher test, UN Security Counci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pace Law, Space Treaty